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최창희 연구위원, 송윤아 연구위원

■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구매자(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신용보험은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지 않은 경제주체들이 최소한의 리스크로 신용(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함. 구매자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들은 창·폐업률이 높고 업력이 짧은 경우가 많아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없이 기업의 신용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강화로 보험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제한되어 보험자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과 신용거래가 많은 기업에 신용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졌음. 정부당국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신용거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취급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험은 신용거래에서 채권자(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 또는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신용거래상 리스크를 줄여 신용거래 활성화에 기여함.

- 신용보험의 보험계약자¹⁾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채권자) 자신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자신을 위한 보험’임.
 -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경제주체들은 신용보험을 활용해 신용거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현재 일부 공공기관 및 공제조합이 각각의 특별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증보험(공제)·신용보험(공제)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에서는 서울보증보험만이 보증보험·신용보험을 취급하고 있음.²⁾
 - 서울보증보험은 2015년 기준 17개의 신용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신용보험 총가입금액은 2015년 기준 약 55억 원에 이름.

1) 편의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고 가정하였음. 신용보험의 경우 대부분 계약자가 피보험자임.

2) 공공기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제사업자: 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 등.

-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은 2015년 기준 인수총액(보험가입매출채권) 16조 2,764억 원, 보험료 374억 원인 시장임.³⁾
- 현재 판매 중인 신용보험에는 매출채권 신용보험, 상업 신용보험, 임대관리임차료 신용보험, 개인금융 신용보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등이 있음.

■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없이 이들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기업신용정보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험자가 기업의 신용정보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은 창·폐업이 잦고 업력이 짧은 경우가 많아⁴⁾ 기업신용정보를 토대로 이들의 실제 신용도를 정확히 가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법 개정 이전에 보험자들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해왔음.

■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강화로 보험자의 개인정보 수집⁵⁾과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어려워졌음.

- 최근까지 보험자들은 구매자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왔으나, 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로 보험자의 개인정보 취급이 어려워졌음.
 - 먼저, 보험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⁶⁾
 -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의 정보가 개인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최근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을 개인정보로 구분해 보험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들 정보를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⁷⁾
- 먼저, 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3) 매출채권보험은 정부가 사업의 결손을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사업으로 2004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사업을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음. 외상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채권이 부도날 경우 협력업체들까지 연쇄부도가 날 가능성이 큰데, 매출채권보험이 부도 채권의 최대 80%를 보상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함.

4) 2015년 현재 국내에서 93,768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음. 동 통계는 대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기업을 경우 창·폐업 수가 많지 않아 이들 중 대다수가 중소·개인기업임;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http://stat2.smba.go.kr/index.jsp>) 참조.

5)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판매자)로부터 구매자의 개인 정보를 받는 행위.

6)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참조.

7) 정부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중소기업 대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개인 정보로 구분됨; 정부관계부처(201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p. 53 참조.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⁸⁾

-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함.⁹⁾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보험자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보험자들이 구매자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의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잃어, 이들과 신용거래가 많은 판매기업에 신용보험을 제공할 수 없게 됨.

- 보험자들은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개인기업)들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에 대한 신용보험 인수를 제한하고 있어, 판매자가 외상판매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신용거래가 위축될 여지가 있음.
 - 특히, 영세 개인기업(구매자)의 경우, 외상 매입기반 축소 및 현금거래 전환 등으로 인해 자금 경색을 겪을 수 있음.
- 서울보증보험은 가입률이 저조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보험 문제를 신용보험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짐.
 -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건설도급자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보험¹⁰⁾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도급자의 보증보험 가입률이 낮음.¹¹⁾
 - 이 경우 하도급자가 신용보험에 가입해 공사대금 미지급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법 개정으로 보험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면책조항이 사라져 하도급자가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짐.

■ 신용정보법 강화로 한국의 신용거래 환경이 악화된 반면, 미국은 원활한 신용거래 환경 조성 및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채권자의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다음 주체들은 타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¹²⁾
 - 개인이 채무자로서 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채권자, 개인과 이미 신용거래를 한 채권자,

8)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까지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제공·조회 동의가 이루어졌음. 2009년 신용정보법 전면개정 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가 추가되었고, 2015년 개정에 따라 제공 시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음.

9)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10)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대납하는 보험임.

11) 2015년 현재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의 지급보증서 교부율이 각각 71.9%와 42.9%임;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6), 『2015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참조.

12) 미연방준비은행(<https://www.federalreserve.gov/creditreports/>) 참조.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회사·핸드폰회사·전기회사·수도회사 등, 개인이 동의한 경우의 (잠재)고용주, 정부기관, 은행·부동산 임대인 등 개인과 합법적 거래를 하는 주체

● 미국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¹³⁾

-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계좌 개설 심사를 하는 경우, 채용 목적 신용 조회, 신용정보주체가 관련된 보험의 인수 심사, 법에 따른 면허 또는 정부 보조 심사, 잠재적 투자자·서비스 제공자·현 보험자 등이 신용정보주체의 채무 지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와 사업관계에 있거나 신용정보 주체가 계약 이행이 가능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정부당국은 신용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신용보험에 가입해 신용거래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당국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또는 타 법률¹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보험자가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신용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자가 신용보험 제공을 위해 개인·중소 구매기업 대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허용
- 보험자가 신용보험의 인수 및 유지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자가 구매자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표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 **kiri**

13)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b 참조.

14) 「보험업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타 법에서 정해진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과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신용정보법 제32조).